의료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및 간담회

2019.06.07

환 경 부

대 구 지 방 환 경 청



목 차

대구지방환경청

Ⅰ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Ⅲ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Ⅴ 병원별 우수 관리 사례 발표

Ⅵ 현장 상황 공유 및 질의 응답

대구지방환경청

□ 의료폐기물 지역별 발생 현황

(단위: 톤/년, %)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합 계	125,421	100	142,650	100	151,438	100	169,926	100	200,283	100	217,458	100	219,013	100
서 울	37,772	30.1	42,984	30.1	46,037	30.4	49,850	29.3	54,306	27.1	60,430	27.8	53,152	24.3
부 산	8,856	7.1	10,122	7.1	12,086	8.0	13,013	7.7	14,974	7.5	16,579	7.6	18,180	8.3
대 구	6,162	4.9	7,794	5.5	7,436	4.9	7,555	4.4	9,051	4.5	9,916	4.6	10,447	4.8
경 북	5,054	4.0	5,644	4.0	6,289	4.2	7,442	4.4	8,079	4.0	8,960	4.1	9,100	4.2
인 천	5,054	4.0	5,830	4.1	6,059	4.0	6,866	4.0	8,149	4.1	8,500	3.9	9,550	4.4
광 주	4,348	3.5	4,771	3.3	5,103	3.4	5,822	3.4	6,359	3.2	6,835	3.1	7,614	3.5
대 전	4,802	3.8	5,206	3.6	5,680	3.8	6,022	3.5	6,793	3.4	7,344	3.4	7,602	3.5
울 산	2,301	1.8	3,184	2.2	3,002	2.0	3,255	1.9	3,868	1.9	4,104	1.9	4,418	2.0
세 종	-	-	150	0.1	166	0.1	180	0.1	214	0.1	261	0.1	280	0.1
경 기	25,401	20.3	27,314	19.1	28,510	18.8	31,449	18.5	34,734	17.3	38,403	17.7	39,365	18.0
강 원	2,779	2.2	3,038	2.1	3,283	2.2	3,612	2.1	4,031	2.0	4,515	2.1	5,079	2.3
충 북	2,967	2.4	3,327	2.3	3,693	2.4	3,856	2.3	4,341	2.2	4,882	2.2	5,172	2.4
충 남	3,538	2.8	3,921	2.7	4,390	2.9	5,267	3.1	5,413	2.7	6,631	3.0	6,800	3.1
전 북	5,229	4.2	5,691	4.0	4,929	3.3	7,059	4.2	7,833	3.9	7,203	3.3	9,143	4.2
전 남	3,933	3.1	4,982	3.5	5,307	3.5	6,067	3.6	6,657	3.3	7,104	3.3	7,437	3.4
경 남	6,452	5.1	7,595	5.3	8,478	5.6	11,702	6.9	24,247	12.1	24,440	11.2	23,882	10.9
제 주	774	0.6	1,097	0.8	990	0.7	909	0.5	1,233	0.6	1,351	0.6	1,792	0.8

목 차

대구지방환경청

Ⅰ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Ⅲ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Ⅴ 병원별 우수 관리 사례 발표

Ⅵ 현장 상황 공유 및 질의 응답

Ⅰ.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

□ 추진전략

○ **('19년)** 발생량 저감(226천톤→**215**천톤), 처리용량 확대(190천톤→**217**천톤)

○ 분리배출 지침 이행 강화, 종합병원별 감축목표 설정·관리, 현장 지원 및 집중 홍보 등으로 **'18년 대비 5% 이상** 감축 추진('19년)

○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위해성 조사'(~'19.6, 보건학회)를 토대로 감염 우려 없는 일부 기저귀(단순 노인질환 등)에 대한 **의료폐기물 제외** 검토('19년)

※ 감염우려 없는 **노인요양시설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旣제외(폐관법 시행령 개정, '18.12)

○ 대형병원 위주로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現 교육부 의원발의 협의 중)

Ⅰ.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분리배출 지침 시행 이후)

2017년 총 위탁량(A)	2018년 총 위탁량(B)	전년 대비 증감(C=B-A)	증감율 (C'=B-A/A)
205,642.71	224,554.80	18,912.09	9.20%

2017년 01~07월 위탁량(D)	2018년 01~07월 위탁량(E)	전년 대비 증감 (F=E-D)	증감율 (F'=E-D/D)
117,211.44	129,620.38	12,408.94	10.59%

2017년 08~12월 위탁량(G)	2018년 08~12월 위탁량(H)	전년 대비 증감 (I=H-G)	증감율 (I'=H-G/G)
88,431.27	94,934.42	6,503.15	7.35%

2017년 총 위탁량(A)	2018년 총 위탁량(B)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 (C=B-A)	증감률 (C'=B-A/A)
86,521.24	95,111.67	8,590.43	9.93%

2017년 01월~07월(D)	2018년 01월~07월(E)	전년 대비 동기간 증감 (F=E-D)	증감률 (F'=E-D/D)
49,570.84	54,988.62	5,417.78	10.93%

2017년 08월~12월(G)	2018년 08월~12월(H)	전년 대비 동기간 증감 (I=H-G)	증감률 (I'=H-G/G)
36,950.47	40,122.94	3,172.47	8.59%

2018년 01월~04월(J)	2019년 01월~04월(K)	전년 대비 동기간 증감 (L=K-J)	증감률 (L'=K-J/J)
31,262.03	32,245.03	983.00	3.14%

목 차

대구지방환경청

Ⅰ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Ⅲ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Ⅴ 병원별 우수 관리 사례 발표

Ⅵ 현장 상황 공유 및 질의 응답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법 http://www.law.go.kr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제35조(법정교육)
- 제36조(관리대장 기록 보존)
- 제38조(실적보고서)
- 제63조~제67조(벌칙)
- 제68조(과태료)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18.>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12. 3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8. 12. 31.>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반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인체조직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거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나)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호 다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1) 삭제 <2011.9.29>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6) 5)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7)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8)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가)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나)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9)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12)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다.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악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악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⑥ 운반장소: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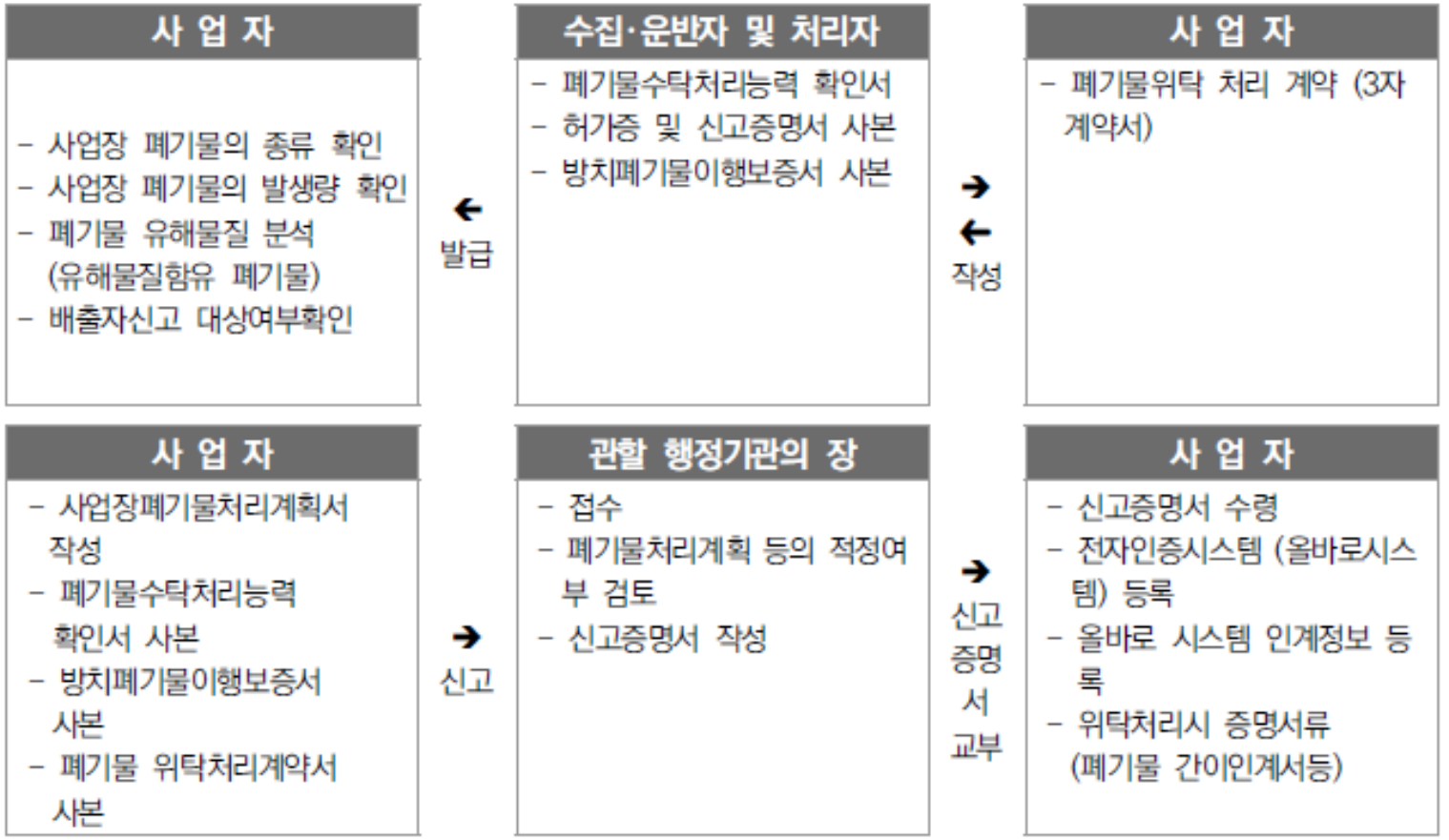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종류		폐기물의 형태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		격리된 사람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된 것	7일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조직·장기·신체 일부, 혈액·고름 등	15일
	병리계 폐기물	검사에서 사용된 배양액 등, 폐배지, 폐장갑 등	15일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수술용 칼, 침 등	30일
	생물·화학 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등	15일
	혈액오염 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발생 폐기물 등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 등이 묻어 있는 탈지면, 붕대, 일회용 주사기 등	15일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그림] 신규 신고시 절차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2-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 확인(관련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7항)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1.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신고서 제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서 사본을 제출
2)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폐기물 배출자의 변경으로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최초 확인을 받아야 함 (양도·양수 또는 임대 등)
4)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 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확인을 신청하고 변경확인 기관은 기존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확인 서류 일체를 이관 받은 후 변경확인을 함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2-2-2.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1)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2) 월 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3)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

4)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은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규칙 제16조의4 제2항)로 산정

2-2-3.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1)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새로이 배출되는 폐기물을 추가하고, 동 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와 수탁확인서를 제출

2) 확인받지 않은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지정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2-2-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1) 운반자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계약서 사본제출

2) 처리자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계약서 사본제출

3)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뀐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바뀐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 및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 자가처리 방법의 변경과 위탁처리방법의 변경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 공동처리에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로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 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위탁처리의 경우에 한함) 및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처리계획확인 증명서(공동운영기구를 통하여 공동 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제출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Allbaro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로그인
공인인증서관리
회원가입
올바로 소개
순환골재
폐기물감량
폐기물통계
고객지원
MY올바로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ID
PASSWORD
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로그인
공인인증서관리
인증프로그램
자원이 순환되는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
올바로 시스템
처음이신가요?
처음 사용하신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하세요
폐기물인허가
회원가입
인증서발급/등록
전자인계서작성
대장관리
실적보고
콜센터안내
1644-0007
평일 : 09:00 ~ 18:00
지역별 연락처안내
서식자료
원격지원
전자팩스수신조회
올바로매뉴얼
동영상매뉴얼
자주묻는질문

목 차

대구지방환경청

Ⅰ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Ⅲ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Ⅴ 병원별 우수 관리 사례 발표

Ⅵ 현장 상황 공유 및 질의 응답

목 차

대구지방환경청

Ⅰ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Ⅲ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Ⅴ 병원별 우수 관리 사례 발표

Ⅵ 현장 상황 공유 및 질의 응답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6년 5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	
	담당 부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과장 / 주무관 053-230-6430 / 053-230-6436
	배포일시	2016. 5. 11(수) / 총 2매	

대구·경북 의료폐기물 부적정 관리 7개 종합병원 적발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유제철)은 2016년 상반기에 31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종합병원)를 점검하여 7개 병원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난해 메르스, 금년도 지카바이러스 발생**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됨에 따라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 점검결과,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보관기간 준수, 조직물류 폐기물의 냉장보관(4℃ 이하) 등 **의료폐기물의 보관방법**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OOOOOOO병원은 **액체상태의 의료폐기물을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전용용기 재사용,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일자를 표기하지 않는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OOOO병원, OOOO병원, O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다가 적발되었고, OOO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이 적발되었다.

□ 기타, OOOO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OOOOO의료원은 의료폐기물 배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적발되었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점검결과, 의료폐기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병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집중 점검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장 간담회를 추진하여 의료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붙임 2 | 주요 유형별 위반 사진

유형 Ⅰ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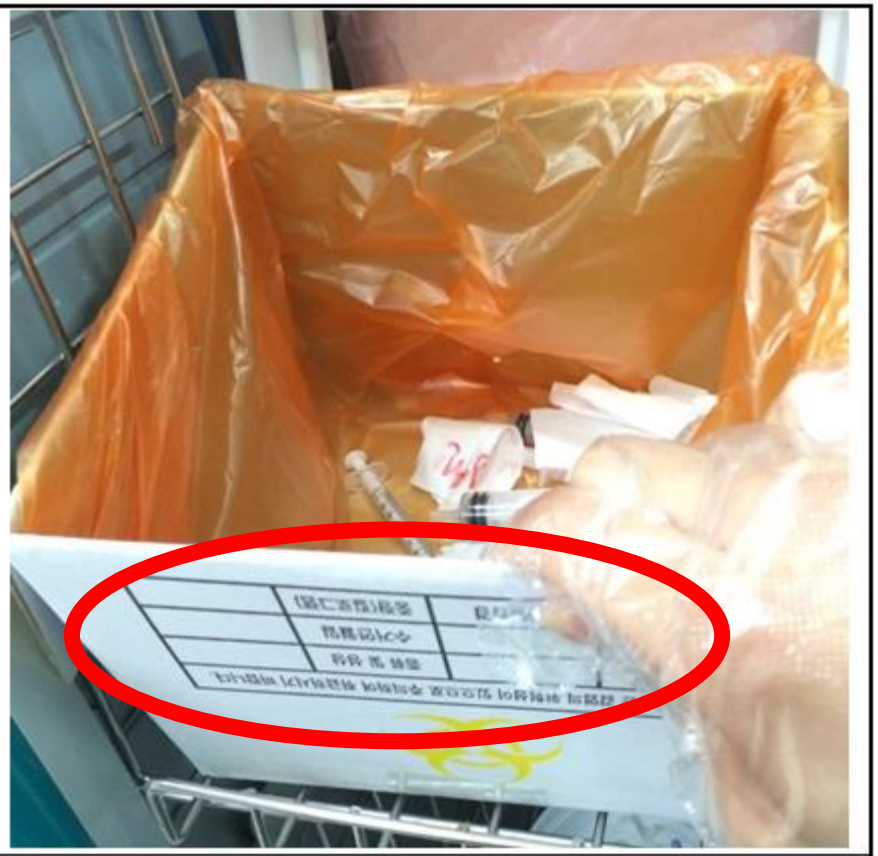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부적정 보관한 액체상태의 손상성 폐기물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유형 Ⅱ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 미표기



사용개시 연월일을 표기하지 않은 채 사용 중인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사용개시 연월일을 표기하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유형Ⅲ 전용용기 재사용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 재사용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유형Ⅳ 보관창고 표지판 미설치





의료폐기물 보관창고(보관장소)에 보관표지판 미설치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일반쓰레기 혼합 금지]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수액, 포도당, 영양제 분리배출)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금지 사례)





목 차

대구지방환경청

Ⅰ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Ⅲ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Ⅴ 병원별 우수 관리 사례 발표

Ⅵ 현장 상황 공유 및 질의 응답

목 차

대구지방환경청

Ⅰ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

Ⅱ 의료폐기물 관리 실무

Ⅲ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Ⅳ 지도점검 사항 안내

Ⅴ 병원별 우수 관리 사례 발표

Ⅵ 현장 상황 공유 및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